

규제연구 제14권 제2호 2005년 12월

시장진입장벽에 따른 조세지원 효과의 행태변화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이 경 략*

(접수일: 5/13, 게재확정일: 6/29)

내재적 조세는 조세지원정책의 효과를 검증하는 하나의 지표가 되고 있다. Scholes 등(2002)의 주장에 의하면 내재적 조세의 실현은 조세혜택과 시장구조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최근 내재적 조세와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조세혜택의 규모뿐만이 아니라 시장상황에 대한 새로운 변수를 고려한 연구들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시장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구체적인 변수들의 개발은 활발하지 않다. 또한 시장 경쟁상황의 상이함에 따라 내재적 조세의 실현에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실증적 연구가 있으나(김갑순, 2000) 이의 구체적인 행태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증적인 연구가 수행된 바가 없는 것이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산업조직론 연구에서 3가지 시장구조변수(집중지수, 산업자본집약도, 산업광고집약도)를 도출하고 집중지수를 기준으로 전체표본을 시장마찰(진입장벽)의 고저(高低)에 따라 분할한 다음 각 표본들을 대상으로 시장구조변수의 내재적 조세의 실현에 미치는 조절효과의 여부를 확인하고 조절효과가 있다면 그 행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각 하위표본에서 전반적으로 내재적 조세가설은 기각되었으며, 시장구조의 차이와 IMF 이전·이후에 따라 조절행태에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우리나라의 우량기업들은 조세혜택을 받더라도 이미 구축된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신규 경쟁기업들이 경쟁시장 내로의 진입이 어려운 상태여서 오히려 조세혜택이 세전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IMF 이전과 이후에 시장의 상황이 변화됨으로 인해 내재적 조세의 실현의 행태도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조세유인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장구조의 세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함을 확인한 연구결과로 보인다.

핵심용어: 내재적 조세, 진입장벽, 시장구조, 조절효과, 조세혜택

* 천안대학교 경상학부, 충청남도 천안시 안서동 115번지 천안대학교 (krlee@cheonan.ac.kr)

I. 서론

내재적 조세는 정부가 시행한 각종 조세유인 정책으로 인한 조세혜택을 얻기 위해 시장참여자가 증가(경쟁심화)함으로써 조세혜택을 받은 기업이나 해당 산업, 거래에서 경험하게 되는 세전수익률의 하락현상을 말한다(Scholes 등, 2002). 한편, 내재적 조세는 시장메커니즘이 아닌 정부의 강력한 가격규제나 영업제한 등 규제정책으로 인해 초과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인위적인 통제를 가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도 있다. 결국 내재적 조세는 세법의 개정이 세전수익률 하락이라는 형태로 실현되는지를 간접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정부 조세지원정책의 효과를 검증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Scholes 등이 시도한 내재적 조세의 개념적 정의를 통해 내재적 조세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이 성립되어야 함을 알 수가 있다. 첫째, 조세혜택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즉 조세혜택이 부여되는 세법규정(조세감면규정)이 제정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조세혜택시장으로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세법상의 조세지원혜택을 받기 위해 특정 조세감면 대상자산을 구입해야 한다. 세법규정상 조세혜택이 부여되어 있더라도 조세혜택을 받기 위해 특정 조세감면 대상자산을 구입하지 않는다면 내재적 조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셋째, 완전한 상태의 시장마찰이 존재한다면 내재적 조세는 실현될 수 없다. 시장마찰은 정부규제(인허가, 가격규제, 영업제한 등), 반경쟁적 시장구조(독점, 과점), 사적소유권(특허권, 기타 지적소유권)과 계약권 그리고 다양한 거래비용의 형태로 나타나 완전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완벽한 진입장벽을 구축함으로써(예: 독점기업의 경우) 경쟁업체들이 조세혜택이 부여되는 산업으로의 신규진입과 투자증가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는 조세혜택으로 인한 세전수익률의 감소인 내재적 조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진입장벽에 의해 보호받는 기업들

만 조세혜택만큼의 초과수익률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조세유인정책에 의한 조세정책효과 및 과세형평의 침해정도는 시장의 완전성 정도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내재적 조세에 관한 실증연구에 있어서 조세혜택에 의한 영향을 고려함과 동시에 시장의 불완전성, 즉 시장마찰의 정도가 내재적 조세의 발생과 크기에 미치는 영향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내재적 조세와 관련된 연구들(이준규와 이태희, 1997; 김갑순, 2000; 김갑순, 2001)에서는 조세혜택의 규모뿐만이 아니라 시장상황에 대한 새로운 변수를 고려한 연구들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시장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구체적인 변수들의 개발이 활발하지는 않다. 또한 시장 경쟁상황의 상이함에 따라 내재적 조세의 실현에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보고가 있으나(김갑순, 2000; 김갑순, 2001) 이의 구체적인 행태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증적인 연구가 수행된 바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산업조직론 연구에서 시장구조변수를 도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전체표본을 시장마찰(진입장벽)의 고저(高低)에 따라 분할한 다음 각 표본들을 대상으로 시장구조변수의 내재세 실현에 미치는 조절효과 여부를 확인하고, 조절효과가 있다면 그 행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시장상황에 따른 내재세 실현의 차이와 그 행태분석은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조세지원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선결과제라 여겨진다.

II. 선행연구의 검토

Berger(1993)는 내재적 조세가 조세혜택, 시장마찰 그리고 시장참가 여부에 의해 실현여부 및 그 크기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¹⁾ 조세혜택이 주어지고 시장마찰이 전혀 없는 완전경쟁하에서는 조세혜택을 얻고자 경쟁시장에 진입하는 경쟁자들로 인해 조세혜택 기업의 세전수익률이 하락하게 되는데 이러한 세전수익률의 하락은 조세비혜택기업의 세후수익률과 같아질 때까지 계속된다. 따라서 「조세혜택의 크기 = 내재적 조세의 크기」의 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그러나 조세혜택기

1)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Berger(1993)의 연구 pp.157-166을 주로 참조하였다.

업이 시장마찰(특허권, 정부규제 등)에 의해 어느 정도 보호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경쟁자들의 신규진입이 제한을 받게 된다. 따라서 조세혜택 기업의 경우 「내재적 조세 < 조세혜택」의 관계가 성립한다. 이때 내재적 조세의 크기는 시장마찰의 강도에 반비례하며 조세혜택기업은 「조세혜택 - 내재적 조세」만큼의 초과수익률을 얻게 된다. 더구나 조세혜택을 받으면서 시장마찰에 의해 완전히 보호되고 있는 독점시장의 경우에는 조세혜택을 얻고자 하는 신규업체들의 진입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따라서 조세혜택을 얻고 있는 이 독점기업은 「(내재적 조세=0) < 조세혜택」의 관계가 성립하여 조세혜택의 크기만큼 초과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다.

한편, 조세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조세혜택이 주어진 경쟁시장 내에서 경쟁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내재적 조세 > (조세혜택=0)」의 관계가 성립한다. 이 경우 내재적 조세의 크기는 조세혜택을 받고 있는 산업 내의 경쟁정도에 비례하게 되며, 이 기업은 내재적 조세만큼 세전수익률이 하락하게 된다. 이 기업은 조세혜택(Tax Benefit)은 받지 못하면서 세금비용(Tax Cost)인 내재적 조세를 지불하고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잘못된 조세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기업의 세무계획 수립자가 당해 경쟁시장 내에서 경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기업에 분명한 전략적 이점을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함으로써 이러한 단기적인 세무상의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라면 문제는 없다. 더 나아가 기업의 세무계획 수립자가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세법규정에 부합하는 거래를 통해 실제 세금비용(법정세금비용 - 조세혜택 + 내재적 조세)을 절감시킨다면 가장 합리적인 세무의사결정을 한 것이 된다. 그러나 세무계획 수립자가 이러한 장기·전략적인 시각 없이 조세혜택이 부여되는 시장 내에서 경쟁함으로써 내재적 조세를 발생시킨다면 이 기업의 실제 세금비용은 「법정세금비용 + 내재적 조세」가 되어 잘못된 세무의사결정을 한 것이 된다. 또한, 조세혜택을 받지 못하고 조세혜택이 부여된 시장 내에서 경쟁하지도 않는 기업의 경우에는 내재적 조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내재적 조세 = (조세혜택=0)」의 관계가 성립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국내기업들의 경쟁상황은 내재적 조세가설이 가정하고 있는 것처럼 시장마찰이 전혀 없는 완전경쟁시장하에서 경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재적 조세의 존재를 검증하는 세전순이익과 세금보조금간에 완전한 정(正)의 음(-)의 관계는 약화될 것으로 판단된다.²⁾ 내재적 조세가 실현된 만큼 세전수익률도 감소하게 되지만 기업 경영활동의

결과 산출되는 세전수익률에는 내재적 조세에 의한 영향 이외에도 사실상 수많은 영향 요인들이 존재한다. 고종권(1996)은 외형적 조세부담률이 낮은 기업(조세혜택을 받는 기업)이 모두 내재적 조세(세전수익률의 감소)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다음의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과세당국에서도 명시적 조세가 적은 기업의 경우 세제상의 틈을 찾아 적정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미국의 선택적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나 국내의 조세 감면규제법상의 조세혜택을 받는 경우 최저한세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기업들이 세제상의 허점을 이용하여 조세절감을 취하려는 것을 막음으로써 과세의 공정성을 달성하려는 정책적 수단의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기업일수록 로비 활동을 통해 조세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조세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세금을 절약하는 조세전략을 취할 수가 있고 계열기업을 통한 이익이전(Income Transfer)을 함으로써 가능한 한 조세를 줄일 수 있어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조세부담이 적다는 Porcano(1986)의 견해 역시 고종권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미시경제학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복잡하고 미묘한 현실적 상황을 단순화하여 내재적 조세를 조세혜택과 시장마찰의 상호관계의 결과로서만 파악하려 한다. 그 이유는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작업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본 연구에서 다루려는 연구의 범위를 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조세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실제로 완전경쟁시장하에서 경쟁이 이루어짐으로써 내재적 조세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시장마찰로 인해 내재적 조세의 실현이 방해받고 있는지, 내재적 조세의 실현이 방해받고 있다면 시장마찰의 정도(크기)에 따라 표본집단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려고 하는 내재적 조세가설은 완전경쟁 시장 및 모든 기업들의 위험수준이 동일하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물론, 이러한 가정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현실적으로 기업들은 불완전경쟁시장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위험수

2) 1992년 재정경제원 경제백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축적된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부주도의 강력한 수출중심형 성장정책을 전개했기 때문에 중화학공업 부문을 중심으로 과점적 시장구조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준도 각기 다르다. 그러나 이상적인 가정을 설정해 두고 현실상황이 이러한 가정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파악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완전경쟁시장 및 동일한 위험수준이라는 가정이 지닌 이 연구모형의 한계점을 인식하면서 이와 같이 단순화시킨 모형이나 이론이 함축하고 있는 바를 이해할 수 있다면 보다 폭넓게 현실문제를 바라보는 안목을 지닐 수가 있을 것이다. 지금의 논의는 본 연구에서만 아니라 현실을 단순화시킨 대부분의 경제이론들에서도 적용될 수가 있다(나성린·전영섭 1998).

Scholes 등(2002)이 내재적 조세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이에 관한 이론을 체계화한 이래로 내재적 조세의 존재를 실증적으로 입증하거나 내재적 조세를 직·간접적으로 측정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Wilkie 1992; 정운오 1996; 고종권 1996; 이준규와 이태희 1997; 김갑순 1998; 서대석 1998; 정유석 1998; 김갑순 2000; 김갑순 2001). 내재적 조세 관련 연구가 지니는 실무적·정책적 함의는 세무회계학 연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세무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시 세금비용만을 최소화하려는 기존의 시각을 전환시켜 비세금비용을 포함한 모든 거래비용을 동시에 고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내재적 조세와 관련된 기존의 실증적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완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첫째, 내재적 조세가설 검증시 산업조직론 연구로부터 시장마찰 내지는 시장구조에 대한 보다 정교한 측정치를 포함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산업조직론 연구에서 시장구조가 시장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을 조사하였다. Bain(1951)은 1936년부터 1940년까지의 미국 42개 제조업을 대상으로 산업의 평균이윤율(자기자본순이익률)과 산업집중(CR8) 사이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 유의적인 양(+)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Collins & Preston(1969)은 광공업 센서스 자료를 기초로 표준산업분류 4자리 분류 240개 이상의 제조업을 대상으로 산업이윤율(가격-비용마진) = f(시장집중, 시장의 크기, 자본집약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시장집중이 시장이윤율과 유의적인 양의 관계에 있고, 시장집중이 안정 또는 상승하는 산업에서는 시장집중이 높을수록 시장이윤율이 높으며, 시장집중이 감소하는 산업에서는 유의적인 관계가 없고 시장이윤율이 비교적 낮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Hall & Weiss(1967)는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이 하위기업에 불리한 요인이 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기업이윤율 = f(기업규모)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유의적인 양(+)¹의 관계가 나타나 자금조달의 성공여부가 기업행동을 제약한다고 주장하였다. Comanor & Wilson(1967)의 연구는 광고가 진입장벽 요인으로서의 효과를 갖는지를 분석한 연구로서 광고집약도(광고비/매출액)를 광고에 의한 생산물 차별화의 척도로 정의하였다. 연구결과 광고집약도가 소비재 산업의 이윤율(자기자본순이익률)과 유의적인 양(+)²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얻게 되었다. Esposito & Ecopsito(1971)는 국제적 경쟁이 시장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산업이윤율 = f(수입비율)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유의적인 음(-)³의 관계가 나타나 국제경쟁이 경쟁축진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Lustgarten(1975)은 구매자집중이 시장성과(가격-비용마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산업이윤율 = f(구매자집중)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구매자 집중과 판매자 집중은 정(正)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구매자 집중과 산업이윤율 사이에는 부(負)의 관계가 있어 판매자 집중이 시장지배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증명했다. Asch & Seneca(1976)는 불황기에 기업들이 공모 또는 담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론적인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불황기에 산업이윤율이 낮아지는지의 여부를 분석한 연구에서 불황기에 산업이윤율이 대체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불황기에 공모 또는 담합이 성행한다는 이론적인 가설을 전면적으로 지지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Newman(1979)은 시장 성과 분석에 기업전략을 도입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 연구개발이나 광고, 선전, 투자행동 등 전략적 결정요인에 대한 전략그룹간 격차가 커질수록 전략그룹간 협조는 어려워지며 특정 산업 내에서 다른 전략을 추구하는 전략그룹의 수가 많을수록 산업 내에서 경쟁이 촉진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한편, Demsetz(1973)는 고이윤율의 원천은 독점이 아니라 기업경영의 효율에 의해 발생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평균이윤율 = f(CR₄, 기업규모)라는 공식을 이용하여 집중도가 이윤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기업뿐이므로 효율이 높은 대기업에만 높은 이윤이 달성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Demsetz의 연구결과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기업규모와 시장점유율을 효율의 크기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Ravenscraft(1982)는 시장구조-시장성과 연구에 산업 및 사업부 부문의 자료를 이용하여 이윤율(매출액영업이익률, 가격-비용마진)과 CR₄, 시장점유율, 산업의 성장률, 수출집약도, 광고집약도, 연구개발집약도, 총자산 등 20개 항목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업부문과 산업간 분석결과가 상이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예컨대 산업별 분석에서는 CR₄가 유의적이지 않는 양의 관

게인 반면 사업부문별 분석에서는 사업부문의 이윤율이 CR_4 와는 유의적이지 않는 음의 관계 그리고 시장점유율과는 유의적인 양의 관계가 나타나 고이윤율의 원인은 독점이 아니라 효율적인 경영의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시장구조-시장성과」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기존의 국외연구는 1960년대에 와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연구결과 대체로 이윤율 = $f(\text{집중률, 진입장벽})$ 간의 정(+)의 상관관계를 입증하고 있다. Callihan과 White(1999)는 내재세 실현에 있어 시장특성변수의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산업 내에서 우위적인 시장지배력이 내재세 실현에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시장구조-시장성과」간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분석결과도 분석기간이나 이용자료별로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1977년 국내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시장구조(CR_3)-시장성과(매출총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등)간의 관계를 검증한 이규억(1981)의 연구에서는 대부분 비유의적인 음(-)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반면에 1975~1978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한 조병택(1982)의 연구에서는 CR_3 와 가격-비용마진이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한편, 1978년 국내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신의순(1983)의 연구에서 5대 상위기업은 시장구조-시장성과간에 높은 유의성을 나타낸 반면 중위규모의 기업에서는 비유의적인 음(-)의 관계를 나타내어 고이윤율은 담합에 의한 것이 아니라 효율적 경영의 결과라는 효율가설이 국내산업의 성과를 보다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7~1981년까지 상장기업의 품목별 자료를 이용한 김기태(1984)의 연구에서는 고집중기업집단과 저집중기업집단 모두에서 집중률과 이윤율(자기자본순이익률)이 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상의 국내외 연구결과들을 정리해 보면 시장구조와 이윤율간에 서로 상반된 결론들이 도출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시장구조와 시장성과간의 관계성을 정부조세정책의 실현정도를 평가하는 내재적 조세의 연구로 확장시킨 국내연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을 토대로 집중지수(CR_3), 산업광고집약도, 산업자본집약도를 시장구조변수로 도출하였고 이중 집중지수를 시장의 구조를 설명하는 변수로 분석에 이용하였다. 둘째, 내재적 조세가설의 검정에 있어 시장의 정의(범위)를 먼저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의 범위를 현실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논리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료수집의 용이함 등을 이유로 표준산업분류상의 산업분류기준에 따라 동일한 산업에 속

한 기업들이 개별적인 경쟁시장을 구성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시장구조변수도 이에 따라 산업별로 산출이 될 것이다. 셋째, 전체표본을 시장구조의 크기에 따라 분할한 하위표본을 대상으로 내재적 조세가설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Scholes 등(2002)의 논리에 의하면 내재적 조세는 조세혜택과 시장마찰(Market Friction)의 상호작용으로 파악이 된다. 즉 조세혜택이 상대적으로 많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시장마찰이 커서 기업들이 조세혜택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보다 시장마찰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시장장벽을 넘기 위해 소요되는 모든 거래비용)이 더 큰 경쟁시장에서는 내재적 조세는 실현될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반면에 조세혜택이 상대적으로 작더라도 진입장벽이 낮아서 신규경쟁업체의 진출이 용이한 경쟁시장 내에서는 내재적 조세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분석의 단위가 되는 하위표본집단간 조세혜택 정도와 시장마찰 크기의 조합이 서로 상이하다면 조세혜택의 크기를 결정하는 기업특성 요인과 시장마찰의 정도를 결정하는 결정요인의 차이로 인해 하위표본집단간 내재적 조세의 실현 및 그 크기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체표본을 일차적으로 IMF 이전과 이후 기간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시장구조변수 중 집중지수의 크기에 의해 각각 분할하여 분할된 하위표본간 내재적 조세의 발생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내재적 조세의 실현 행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Ⅲ. 연구의 설계

1. 연구변수의 도출 및 조작적 정의

이상에서 제시된 이론적 고찰에 기초하여 연구수행을 위한 독립 및 종속변수 그리고 조절변수(시장구조변수)를 도출하고 이의 조작적인 정의를 시도하였는데 이를 제시하면 다음의 <표 1>, <표 2>와 같다. 한편, 조세혜택의 세전이익에 대한 영향관계에 대해서 시장구조가 조절작용을 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조절변수로는 집중지수(CR₃)를 이용하게 된다.

〈표 1〉 본 연구수행을 위한 독립 및 종속변수의 선정

변 수 명	관 련 연 구
세전자기자본조세혜택비율 (독립변수)	Wilkie(1992), 고종권(1996), 이준규와 이태희(1997), 김갑순(1998)
집중지수(CR ₃) (시장구조변수)	Bain(1951), Collins & Preston(1969), Demsetz(1973), Newman (1979), Ravenscraft(1983), 이규억(1981), 조병택(1982), 신의순(1983), 김기태(1984), Challihan & White(1999)
세전자기자본수익률 (종속변수)	Wilkie(1992), 고종권(1996), 이준규와 이태희(1997), 김갑순(1998)

〈표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구 분	변 수 명	산 식
종속변수	세전자기자본수익률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자기자본
독립변수	세전자기자본조세혜택 비율	$[(\text{법인세차감전순이익} \times \text{법정최고세율} - \text{법인세실제납부액}) / \text{자기자본}] / (1 - \text{법정최고세율})$
시장구조변수	시장집중률(CR ₃)	산업별 상위 3社의 시장점유율 합계

2. 표본의 선정 및 표본집단의 분할

본 연구에서는 IMF 이전과 이후의 시장상황이 상이할 것으로 판단하여 1990년에서 1996년까지 계속상장된 기업(IMF 이전 기간)과 1998년부터 2003년까지 계속상장된 기업(IMF 이후기간)을 대비하여 각각 분석하였다. 또한 금융업·금융관련 서비스업·보험업·건설업 등이 아닌 기업, 결산일이 12월 31일인 기업, 세전이익이 발생한 기업, 자기자본이 양(+)의 값을 갖는 기업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기업을 한국신용평가(주)의 재무자료 데이터베이스인 KIS-FAS에서 추출하였다. 그 결과 IMF 이전 기간에서는 총 92개 기업이 선정되었으나 CR₃를 계산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업수인 3개 미만의 기업을 가진 9개 산업의 13개 기업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0개 산업의 79개 기업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한편, IMF 이후 기간에서는 총 157개 기업이 선정되었으나 CR₃를 계산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업수인

3개 미만의 기업을 가진 3개 산업의 56개 기업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0개 산업의 101개 기업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표본으로 선정된 기업들을 한국신용평가(주)의 산업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산업별 표본기업수

산 업	표본기업수 (IMF 이전)	표본기업수 (IMF 이후)
음식료품 제조업	9개	11개
섬유제품 제조업	9개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0개	6개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20개	34개
제1차금속산업	4개	6개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3개	-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10개	11개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3개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개	7개
도매 및 상품중개업	8개	8개
봉제의복 및 모피	-	4개
고무 및 플라스틱	-	7개
전기, 가스 및 증기업	-	7개
합 계	79개	101개

주: IMF 이전은 1990년부터 1996년까지이며, IMF 이후는 1998년부터 2003년까지를 말한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체표본은 다양한 산업에 속한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어 분석 단위가 되는 기업들의 경영여건이나 시장구조 등이 상당히 이질적인 것이 현실이다. 기존연구들에서는 전체표본을 기업규모나 기업집단 포함여부, 산업특성, 조세혜택의 크기에 따라 분할하여 내재적 조세의 발생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이준규와 이태희 1997; 김갑순 1998). 그런데 내재적 조세의 발생에 있어 핵심적 요인이 되는 진입장벽(시장마찰)의 고저(高低)에 따라 내재적 조세가 차이를 나타내는지는 검증이 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체표본을 시장구조(시장집중률)에 따라 분할(양분)한 하위표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아래의 <표 4>에는 표본집단의 분할을 위한 구체

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표 4〉 시장구조에 의한 표본집단의 분할

표분분할기준	분할된 하위표본집단	비 고
시장집중도	고집중표본(30% 이상인 산업) 對 저집중표본(30% 미만인 산업)	CR ₃ 30% 기준

3. 연구가설의 도출

내재적 조세는 조세혜택의 크기에 의해서만 아니라 시장 진입장벽의 유형이나 그 정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즉 조세혜택이 상대적으로 많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시장마찰이 커서 기업들이 조세혜택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보다 시장마찰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시장장벽을 넘기 위해 소요되는 모든 거래비용)이 더 큰 경쟁시장에서는 내재적 조세는 실현될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김갑순(1998)에 의하면 조세비혜택표본에 비해 기업규모나 경쟁력이 강한 조세혜택표본에서는 내재적 조세가설이 기각되고 상대적으로 시장점유율이 낮아 시장마찰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조세비혜택표본에서만 내재적 조세가설이 지지되고 있어 이러한 사실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 진입장벽이 서로 상이하다면 하위표본집단간 내재적 조세의 실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 I 이 도출될 수 있다. 또한 IMF 이전과 이후 기간에 있어서 시장의 경쟁구조가 상당히 달라졌을 것이므로 이로 인한 내재세 실현이나 내재세의 실현행태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 II 가 도출될 수 있다.

가설 I:

가설 I-1: 고집중 산업 내에서는 내재적 조세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가설 II :

가설 II-1: IMF 이전과 이후 기간에 내재세 실현에 비교집단간(고집중 또는 저집중 표본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I-2: IMF 이전과 이후 기간에 비교집단간(고집중 또는 저집중 표본간) 내재적 조세 발생행태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IV. 가설의 검증

1. IMF 이전 기간('90년에서 '96년)에 CR₃의 차이에 의한 내재적 조세

전체표본을 CR₃(시장구조)를 기준으로 CR₃가 30% 미만인 식품료품, 섬유제품, 비금속 광물제품,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을 저집중표본으로, 그리고 CR₃가 30% 이상인 제1차금속산업, 기타기계 및 장비,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자동차 및 트레일러,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고집중표본으로 분류하고 각 하위표본들이 CR₃의 차이에 따라 내재적 조세의 발생이 차이를 나타내는지 그리고 시장구조변수의 조절효과의 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고집중표본과 저집중표본을 대상으로 각각 조절회귀분석(Sharma et al. 1981)을 실시하였다³⁾(<표 6>, <표 7> 참조). 한편, 고-저집중 표본간 조세혜택의 크기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고집중표본의 조세혜택이 유의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3)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조절회귀분석(Moderated Regression Analysis: MRA)을 이용하는데(Sharma et al. 1981) 본 연구에서는 표본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법인 조절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하나의 영향요인(조세혜택)에 대해 MRA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회귀방정식이 이용된다.

$$(a) y = b_0 + b_1 \cdot x$$

$$(b) y = b_0 + b_1 \cdot x + b_2 \cdot z$$

$$(c) y = b_0 + b_1 \cdot x + b_2 \cdot z + b_3 \cdot x \cdot z$$

여기서 y = 세전수익률, b = 회귀계수, x = 조세혜택, z = 시장구조변수, $x \cdot z$ = 조세혜택과 시장구조변수간의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s)이다. 본 연구에서도 Sharma et al.(1981)의 논리에 따라 위의 3가지 회귀분석을 순서대로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회귀방정식 (b)와 (c)가 유의적으로 다르지 않다면($b_3 = 0, b_2 \neq 0$), z 는 하나의 독립적인 영향요인이 된다. 회귀방정식 (a)와 (b)는 서로 다르지 않지만 (c)와는 다르다면($b_2 = 0, b_3 \neq 0$), z 는 순수한 매개변수(pure moderator)가 된다. 한편 회귀방정식 (a), (b), (c)가 서로 다르다면($b_2 \neq 0, b_3 \neq 0$), z 는 준매개변수(準媒介變數, quasi-moderator)가 된다. 시장구조변수들의 조절효과 여부는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가 유의적인지를 확인함으로써 검증하게 된다.

〈표 5〉 고집중-저집중 표본의 조세혜택크기의 차이검증(IMF 이전 기간)

변 수	표본집단	평 균	표준편차	t 값	유의수준
조세혜택	고집중표본 (217개 기업)	0.01125	0.02203	-4.826	0.000***
	저집중표본 (336개 기업)	-0.00008	0.02970		

주: *** 5% 수준에서 유의적임.

〈표 6〉 고집중표본에 있어 CR₃의 조절효과검증(IMF 이전 기간, N=217)

	회귀방정식	F 값	수정R ²
(1)	PTROE _i =β ₀ +β ₁ PTTSE _i +ε _i 계수 0.074 1.812 (t 값) (16.387)*** (9.948)***	98.954***	0.312
(2)	PTROE _i =β ₀ +β ₁ PTTSE _i +β ₂ CR _{3i} +ε _i 계수 0.108 1.863 -0.086 (t 값) (6.698)*** (10.235)*** (-2.202)**	52.787***	0.324
(3)	PTROE _i =β ₀ +β ₁ PTTSE _i +β ₂ CR _{3i} +β ₃ TSECR _{3i} +ε _i 계수 0.145 -0.584 -0.178 5.740 (t 값) (7.484)*** (-0.764) (-3.761)*** (3.288)***	40.409***	0.354

〈표 7〉 저집중표본에 있어 CR₃의 조절효과검증(IMF 이전 기간, N=336)

	회귀방정식	F 값	수정R ²
(1)	PTROE _i =β ₀ +β ₁ PTTSE _i +ε _i 계수 0.123 1.413 (t 값) (23.418)*** (7.963)***	63.412***	0.157
(2)	PTROE _i =β ₀ +β ₁ PTTSE _i +β ₂ CR _{3i} +ε _i 계수 0.072 1.419 0.308 (t 값) (2.193)** (8.013)*** (1.582)	33.100***	0.161
(3)	PTROE _i =β ₀ +β ₁ PTTSE _i +β ₂ CR _{3i} +β ₃ TSECR _{3i} +ε _i 계수 0.073 -2.156 0.304 19.987 (t 값) (2.244)** (-1.666)* (1.579) (2.788)***	25.106***	0.178

주: ***, **, * 각각 1%, 5%, 10%의 수준에서 유의적임.

CR_{3i} : i기업이 속한 산업의 시장집중도 PTROE_i : i기업의 세전자기자본수익률

TSECR_{3i} : PTTSE_i × CR_{3i} PTTSE_i : i기업의 세전자기자본조세혜택비율

위의 다중회귀분석에 대해서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항목에 대해서는 그 효과의 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Schoonhoven(1981)의 분석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식을 각각 설정하였다.

(1) 고집중표본에 대한 분석: $PTROE = -0.584PTTSE + 5.740TSECR_3$

(2) 저집중표본에 대한 분석: $PTROE = -2.156PTTSE + 19.987TSECR_3$

위 식을 PTTSE에 대해서 미분하면($\Delta PTROE/\Delta PTTSE$)

(1) 고집중표본에 대한 분석: $\Delta PTROE/\Delta PTTSE = -0.584 + 5.740CR_3$

(2) 저집중표본에 대한 분석: $\Delta PTROE/\Delta PTTSE = -2.156 + 19.987CR_3$

$\Delta PTROE/\Delta PTTSE = 0$ 이 되는 CR_3 의 값을 각각 구하면

(1) 고집중표본에 대한 분석: $CR_3 = 0.10$ 이므로 이 값은 CR_3 값의 범위(0.1160~0.5760) 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PTROE에 대한 영향이 단조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2) 저집중표본에 대한 분석: $CR_3 = 0.108$ 이므로 이 값은 CR_3 값의 범위(0.1210~0.2100) 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PTROE에 대한 영향이 단조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파악할 수가 있다. 첫째, 회귀 방정식 (2), (3)에서 CR_3 의 회귀계수가 고집중표본에서만 유의적인 음(-)으로 나타나 고집중표본의 경우에는 시장구조가 집중적이 될수록 세전수익률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저집중표본의 경우 상호작용항을 고려한 회귀분석(3)에서 조세혜택과 세전수익률간에 유의적인 음(-)의 관계가 나타나 내재적 조세가설이 입증되었다.⁴⁾ 셋째,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를 통해 CR_3 의 조절효과 행태를 검증한 결과 고집중표본과 저집중표본 모두에서 단조적인 증가(두 표본집단 모두에서 시장집중도가 높아질수록 조세혜택으로

4) 추가적인 분석결과 저집중표본의 세전수익률은 고집중표본에 비해 유의하게 더 크나 조세혜택은 고집중표본이 유의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결국 고집중표본은 유리한 조세혜택을 받으면서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신규업체의 진입이 어려운 상태에서 정부의 강력한 가격규제 등으로 인해 세전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내재적 조세가 나타날 정도는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저집중표본은 표본의 구성상(III장 2. 표본의 선정 참조) 비교적 우량기업이나 정부의 규제가 강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높은 세전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저집중표본에서 내재적 조세가 검증된 것은 조세혜택으로 인한 신규 시장진입으로 인해 발생한 현상이 아니라 조세혜택의 부호가 음(-)의 값을 가진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인한 세전수익률이 증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증가의 정도는 두 표본집단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고집중표본에서는 CR₃가 준매개변수(Quasi-Moderator), 저집중표본에서는 순수한 매개변수(Pure-Moderator)로 작용하고 있어 조절효과의 행태가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⁵⁾

2. IMF 이후 기간(1998~2003년)에 CR₃의 차이에 의한 내재적 조세

전체표본을 CR₃를 기준으로 CR₃가 30% 미만인 식품료품, 봉제의복 및 모피, 비금속 광물제품, 화합물 및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도매 및 상품중개업(2002~2003년)을 저집중표본으로 그리고 CR₃가 30% 이상인 제1차금속산업,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도매 및 상품중개업(1998~2001년까지), 전기·가스 및 증기업을 고집중표본으로 분류하고 각 하위표본들이 CR₃의 차이에 따라 내재적 조세의 발생이 차이를 나타내는지 그리고 시장구조변수의 조절효과의 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고집중표본과 저집중표본을 대상으로 각각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9>, <표 10> 참조). 한편, 고-저집중 표본간 조세혜택의 크기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표 8> 고집중-저집중 표본의 조세혜택크기의 차이검증(IMF 이후 기간)

변 수	표본집단	평 균	표준편차	t 값	유의수준
조세혜택	고집중표본 (218개 기업)	0.0087	0.02508	1.245	0.214
	저집중표본 (388개 기업)	-0.1267	1.60453		

5) 시장구조가 세전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조세혜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세전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게 될 때, 이러한 시장구조 변수를 준매개변수라 한다. 한편, 시장구조가 세전수익률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조세혜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세전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게 될 때, 이러한 시장구조 변수를 순수한 매개변수라 한다.

〈표 9〉 고집중표본에 있어 CR₃의 조절효과검증(IMF 이후 기간, N=218)

	회귀방정식	F 값	수정R ²
(1)	PTROE _i =β ₀ +β ₁ PTTSE _i +ε _i 계수 0.090 2.331 (t 값) (14.609)*** (10.067)***	101.34***	0.316
(2)	PTROE _i =β ₀ +β ₁ PTTSE _i +β ₂ CR _{3i} +ε _i 계수 0.069 2.363 0.0435 (t 값) (4.541)*** (10.214)*** (1.692)*	52.538***	0.322
(3)	PTROE _i =β ₀ +β ₁ PTTSE _i +β ₂ CR _{3i} +β ₃ TSECR _{3i} +ε _i 계수 0.070 1.984 0.045 2.330E-10 (t 값) (4.846)*** (7.693) (1.773)* (3.088)***	39.594***	0.348

〈표 10〉 저집중표본에 있어 CR₃의 조절효과검증(IMF 이후 기간, N=388)

	회귀방정식	F 값	수정R ²
(1)	PTROE _i =β ₀ +β ₁ PTTSE _i +ε _i 계수 0.142 0.002 (t 값) (25.686) (0.498)	0.248	-0.002
(2)	PTROE _i =β ₀ +β ₁ PTTSE _i +β ₂ CR _{3i} +ε _i 계수 0.169 0.002 -0.016 (t 값) (8.122)*** (0.604) (-1.372)	1.065	0.000
(3)	PTROE _i =β ₀ +β ₁ PTTSE _i +β ₂ CR _{3i} +β ₃ TSECR _{3i} +ε _i 계수 0.170 0.003 -0.163 -3.103E-10 (t 값) (7.495)*** (0.324) (-1.247) (-0.133)	0.622	-0.003

주: ***, **, * 각각 1%, 5%, 10%의 수준에서 유의적임.

CR_{3i} : i기업이 속한 산업의 시장집중도

PTROE_i : i기업의 세전자기자본수익률

TSECR_{3i} : PTTSE_i × CR_{3i}

PTTSE_i : i기업의 세전자기자본조세혜택비율

위의 다중회귀분석에 대해서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고집중표본에 대해서는 그 효과의 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Schoonhoven(1981)의 분석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식을 설정하였다.

$$PTROE = 1.984PTTSE + 2.33E-10TSECR_3$$

위 식을 PTTSE에 대해서 미분하면($\Delta PTROE / \Delta PTTSE$)

$$\Delta PTROE / \Delta PTTSE = 1.984 + 2.33E-10CR_3$$

$\Delta PTROE / \Delta PTTSE = 0$ 이 되는 CR_3 의 값을 각각 구하면

$CR_3 = -8,515,021,459$ 이므로 이 값은 CR_3 값의 범위(0.3554~0.999) 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PTROE에 대한 영향이 단조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파악할 수가 있다. 첫째, 회귀 방정식 (2), (3)에서 CR_3 의 회귀계수가 고집중표본에서만 유의적인 양(+)으로 나타나 고집중표본의 경우에는 시장구조가 집중적이 될수록 세전수익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IMF 이전 기간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둘째,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를 통해 CR_3 의 조절효과 행태를 검증한 결과 고집중표본에서 단조적인 증가(시장집중도가 높아질수록 조세혜택으로 인한 세전수익률이 증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R_3 가 준매개 변수(Quasi-Moderator)로 작용하고 있어 시장구조는 세전수익률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조세혜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세전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V. 연구의 결론

기간 및 시장구조의 크기에 따라 분할한 하위표본집단을 대상으로 내재적 조세가설 검증 및 조절회귀분석을 한 결과가 다음의 <표 11>에 종합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첫째, IMF 이전 저집중표본간에서만 내재적 조세가설이 입증되고 있으나 이는 조세혜택으로 인한 신규기업들의 참여로 인한 현상이 아니라 조세혜택이 음(-)의 값을 가지므로 생겨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IMF 이전과 이후 기간에 대부분의 하위표본들에서 내재적 조세가설이 기각(가설 I이 입증됨)되고 내재제 실현에도 두 기간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II-1이 기각됨). 이러한 결과는 표본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장 우량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어 조세혜택을 얻기 위한 신규기업들의 시장 내로의 진입이 어려운 데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시장구조나 진입장벽에

대한 사전고려나 분석이 없이 이루어지는 조세유인정책은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우량기업들만을 지원하는 결과를 가져와 시장구조를 더욱 독과점화시키는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 수 있는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표 11〉 하위표본집단을 대상으로 한 검증결과 종합

비교대상항목 표본구분 (CR ₃ 기준)		PTTSE	내 재 적 조세가설 검증결과	조절회귀분석 결과		시장구조변수와 중속변수간의 관계
				조절효과 여부	조절효과 의 행 태	
IMF 이전	고집중표본	고집중표본이 유의적으로 큼 (5% 유의수준)	비유의적인 (-)	○ (quasi)	단조적 증가	유의적인 (-)
	저집중표본		유의적인 (-)	○ (pure)	단조적 증가	비유의적인 (+)
IMF 이후	고집중표본	유의적으로 다르지 않음	비유의적인 (+)	○ (quasi)	단조적 증가	유의적인 (+)
	저집중표본		비유의적인 (+)	-	-	비유의적인 (-)

둘째, 조세혜택으로 인한 세전수익률의 감소(증가)에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항목을 대상으로 조절효과의 행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IMF 이전-저집중표본에서는 시장구조가 순수한 매개변수로 작용(단조적인 증가)하였으나 IMF 이후-저집중표본에서는 매개변수로 작용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IMF 이전-고집중표본과 IMF 이후-고집중표본에서는 시장구조가 모두 준매개변수로 작용하며 시장집중도가 높아질 수록 조세혜택으로 인한 세전수익률이 증가하는 단조적인 증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II-2는 부분적으로 입증되었다.

셋째, 시장구조변수의 세전수익률에 대한 관계를 파악한 결과 IMF 이전에 고집중표본에서는 시장집중도가 높을수록 세전수익률이 감소하였으나 IMF 이후에 고집중표본에서는 시장집중도가 높을수록 세전수익률이 증가하는 반대현상이 나타났다.

참고문헌

- 고종권, 「내재적 조세에 관한 실증연구」, 『세무학연구』, Vol.8, 1996.
- 곽태원, 「조세정책의 기본과제와 방향」,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논문집, 1993.
- 김갑순, 『우리나라 기업의 조세혜택과 내재적 조세』,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8.
- _____, 「내재적 조세의 실현과 시장진입장벽」, 『회계학연구』, Vol.25, 2000.
- _____, 「내재세의 실현의 새로운 증거와 시장구조로 인한 내재세의 전가」, 『경영학연구』, Vol.30, 2001.
- 김기태, 「한국제조업의 시장구조와 시장성과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한국경제』, 제2권 1호, 성균관대학교, 1984. 6, pp.101-129.
- 나성린·전영섭, 『공공경제학』, 학현사, 1998.
- 서대석, 「내재적 조세와 불완전경쟁시장에 관한 연구」, 『세무회계학연구』, Vol.1, 1998.
- 신의순, 「한국제조업의 시장구조와 이윤성간 상호관계의 실증적 연구」, 『산업과 경영』, 제20권 제2호, 연세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1983. 8, pp.77-104.
- 이규억, 「한국제조업의 시장구조와 행태·성과의 상호관계 연구」, 『한국개발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981년 여름호, pp.141-157.
- 이준규·이태희, 「조세혜택으로 인한 내재적 조세의 실증연구」, 한국조세연구원, 1997.
- 정운오, 「자산수익률에 미치는 세금효과」, 『세무학연구』, Vol.8, 1996.
- 정유석, 『조세혜택에 따른 내재적조세와 세전수익률에 관한 실증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1998.
- 정충영·최이규, 『SPSS WIN을 이용한 통계분석』, 무역경영사, 1998.
- 조병택, 「고도성장과정하에서의 가격비용 마진을 결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영연구』,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제3권, 1982, pp.91-141.
- Asch and Seneca, "Is Collusion Profitabl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58, 1976, pp.1-10.
- Bain, "Relation of Profit Rate to Industry Concentration: American Manufacturing 1936-1940,"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65, 1951, pp.293-324.

- Berger, Philip G., "Explicit and Implicit Tax Effects of the R&D Tax Credit,"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1, No.2 (Autumn), 1993, pp.131-171.
- Callihan, Debra S. and Richard A. White, "An Application of the Scholes and Wolfson Model to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Implicit and Explicit Taxes and Firm Market Structure,"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21 (Spring), 1999, pp.1-19.
- Collins and Preston, "Price-Cost Margins and Industry Structur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51, 1969, pp.271-286.
- Connor and Wilson, "Advertising Market Structure and Performanc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49, 1967, pp.423-440.
- Demsetz, "The Market Concentration Doctrin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Research*, 1973.
- Esposito and Ecopsito, "Foreign Competition and Domestic Industry Profitability,"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53, 1971, pp.343-353.
- Hall and Weiss, "Firm Size and Profitability,"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49, 1967, pp.319-331.
- Lustgarten, "The Impact of Buyer Concentration in Manufacturing Industri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57, 1975, pp.125-132.
- Newman, "Strategic Group and the Structure Performance Relationship,"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0, 1979, pp.417-427.
- Porcano, Thomas M., "Corporate Tax Rates: Regressive. Proportional or Regressive,"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7 (Spring), 1986, pp.17-31.
- Ravenscraft and Scherer, "The Lag Structure of Returns to Research and Development," *Applied Economics* 14, 1982, pp.603-620.
- Scholes, Myron S. and Mark A. Wolfson, Merle M. Erickson, Edward L. Maydew, Terrence J. Shevlin, *Taxes and Business Strategy: A Planning Approach*, 3rd Edition, Prentice Hall, 2002.
- Schoonhoven, "Problem with Contingency theory: Testing Assumption Hidden within the

Language of Contingency theory,"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981.

Sharma et al., "Identification and analysis of moderator variable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9 (Aug.), 1981, pp.291-300.

Wilkie. Patrick J., "Empirical Evidence of Implicit Taxes in the Corporate Sector,"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4 (Spring), 1992, pp.97-116.

K C I

Empirical Study on Behavior Changes of Tax Supporting Policy Effects due to Entry Barrier

Gyeong-Rak Lee

According to Scholes, Wolfson, Erickson, Maydew & Shevlin (2002), Implicit tax is the result of interaction between tax subsidies and market structure. But most studies related to implicit tax have tested only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subsidies and pre-tax return not considering market circumstance. In other words, the only focuses of previous studies have been adjusted in existence of implicit tax. Therefore this paper generated the three market structure variables (CR₃, industrial advertising intensity, industrial capital intensity) from the previous studies on the industrial organization. After bisecting total sample according to relative height of CR₃ (market friction), tested implicit tax hypothesis on each subsample group (pre-IMF, post-IMF). The goals of this paper verify whether the differences of market structure have an effect on the generation of implicit tax. The empirical results discovered implicit tax hypothesis in each subsample group was rejected. This results reconfirmed Korean oligopolistic market structure. In Korea, because tax-advantaged firms have higher barriers to entry, new competitors may be experience difficulty in entry into new competitive market. Therefore I discovered tax benefit acts as raising factor of pre-tax return in Korean listed companies. These results suggested market structure analyses should be preceded to maximize the effects of tax supporting policy.

Key words: implicit tax, barriers to entry, market structure, moderating effects, tax subsidies